



나눔 · 배려 · 실천 ·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2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2022. 2.

2022년 운영 요약

1.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학교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 학교별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또는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학생 · 교사 · 학부모에 대한 사전 안내 교육 철저

2.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1일 8시간 이내,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의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필요 - 1365(자원봉사센터), VMS(사회복지협의회), DOVOL(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된 봉사활동 중 인정되지 않는 봉사활동도 있음

3.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의 봉사활동 편성: 학년도별 8시간 이내 권장
 - ※ 원격수업 전한 시(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함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 봉사활동: 종류별 학기당 10시간 이내 권장(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 및 각종 도우미 활동)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4. 학생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단순 영상물 시청(소감문 작성 포함) 등은 인정 불가
-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사전교육 학기별 1시간(연 2시간) 가능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한시적으로 인정

목 차

〈요약〉 2022 학생 봉사활동 주요 내용

I. 추진 배경 및 추진 근거	1
II. 추진 목적	1
III. 세부 추진 계획	2
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3
나.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6
다.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8
라. 학생봉사활동 지원 강화	14
V. 추진 일정	15
VI. 기대 효과	15
〈참고자료 1〉 2015 개정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16
〈참고자료 2〉 학생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17
〈참고자료 3〉 학생 봉사활동 유의점 및 인정 기준	19
〈참고자료 4〉 가정통신문 작성 시 참고사항	26
〈참고자료 5〉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28
〈부록〉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39

I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영역 안정적 정착 추진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2018 ~ 2022, 행정안전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근거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09-41호 및 제2015-74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2022)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19)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부, 2021-2025)

II 추진목적

-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 실천 동력 강화
-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운영 방향 제시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III 세부 추진 계획

비 전 **나·배려·실천·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민주시민육성**

목 표 **봉사활동 생활화를 통한 실천의식 제고**

추진 방향

- ❖ 자기 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교육 강화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 안내
-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교육청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학교 자체 기준 및 운영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및 지속적인 관리 철저
- 학교 자체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 강화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당교사가 반드시 임장 지도**하여 봉사활동의 취지 및 안전에 유의
 - ※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방안)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평가·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함
- 「2022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예방

사례1.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준에 대해 안내 및 사전상담을 실시하지 않아서 학생·학부모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탑재된 봉사활동은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함

사례2.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경우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나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해 인정 불가한 봉사활동을 인정함

-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중점내용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편성·운영(공통지침)

-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교감(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역할) 학교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운영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안전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구성원 역할

-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부장이 되고 (각 위원)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 ▶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 봉사활동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 (위원)
 - 학생들이 전 영역에 걸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교육과정,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 단계에 알맞게 활동계획을 수립
 - 봉사활동 영역별, 학년별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

- 「2022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될 수 없음**

□ 학생 대상 봉사활동 사전 안내 교육 실시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교육 실시
 -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 ※ **봉사활동 사전 안내 교육 학기당 1회(1시간) 인정: 비대면(온라인) 교육 가능**
 - 예) 캠페인활동: 학생봉사활동 소양교육(1시간)

▶ 봉사활동 사전 안내 교육 내용(학생·학부모 필수 안내 사항)

- 자원봉사활동의 의미 및 방법
- 2022학년도 학교 봉사활동 계획(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으로 계획된 시수)
- 봉사활동 실시 절차 및 neis 전송방법
- 학생봉사활동 및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가능 기준 등
- 1일 최대 인정시간(8시간)
- 시·도간 전입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 인정 안내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의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필요-1365(자원봉사센터), VMS(사회복지협의회), DOVOL(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된 봉사활동 중 인정되지 않는 봉사활동도 있음
 - ※ 해외 봉사활동 관련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 교육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 ※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
-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확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

□ 학생·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강화

-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 기관 및 시간, 원칙 등 적극 안내
 - ※ **학기 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인정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
 - 특히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사전 확인 철저**
 - ※ **어떠한 형태로든 인정 불가(기부금 형태, 연회비,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포함)**

나.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봉사활동 및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외의 개인 봉사활동 시 반드시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 및 인정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등록된 봉사활동 중 인정되지 않는 봉사활동도 있음을 안내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 예 시 >

구분	평일(Neis 시간표 6교시 입력 시)	평일(Neis 시간표 7교시 입력 시)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 ※ **현월의 경우 일 8시간 초과하여도 봉사활동으로 인정**, 생기부 기재 요령 90쪽 참고
-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여부	×	×	활동인정대상시간				×	×	×	×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기관
-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공공 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 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등록 여부 확인),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2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다.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2015 개정교육과정 **봉사영역(3개) <참고자료1>**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내봉사활동을 봉사활동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봉사활동 영역으로는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이며 학교에서는 내용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을 운영(예: 급식도우미(이웃(친구)돕기활동), 학교숲쓰레기줍기(환경보호 활동), 교내 각종 캠페인활동(캠페인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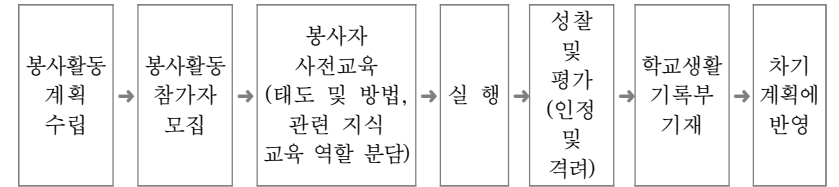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 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봉사활동 시간은 **학년도별 8시간 이내 편성 권장**
- ※ 『학교교육과정/상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 편성 후 원격수업 전환 시 유의사항
 - 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대체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함

○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학기당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
 - ▶ 학교 자율 봉사활동의 예: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 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 **학년 초 학교 자율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제한기준 제시 권장**
 - ▶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시(1명이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도서실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 ▶ 특정 학생을 정해두고 도우미로 활동하지 않도록 함(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취지: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봉사활동 절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 봉사활동 실적

- 대학 입시에 '학교'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 2022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 적용
-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89쪽 참고

※ 2023학년도 고입 비교과(봉사활동) 반영 점수(추후 별도 안내 - 중등교육과)

- 「2023학년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름

학년도	반영 내용
2020년	봉사활동 시간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2021년	봉사활동 시간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2022년	「2023학년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기준

- **학생봉사활동지침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므로 타시도 진출, 타시도 고등학교 입학 희망자는 유의요망**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 학교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3) 실천	·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성찰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성찰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2) 영역별 지침 - (다) 봉사활동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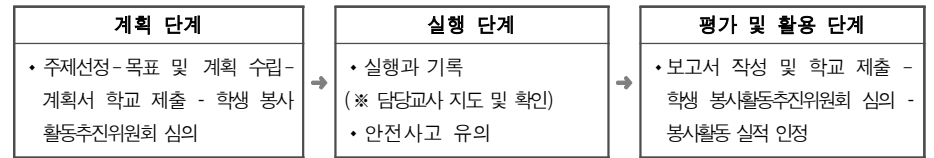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교내·외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함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듬형:** 진로나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고등학교 권장)
- **융합형:**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초등학교 권장)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기관 및 장소:** 교내·외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동일 기관 및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학생의 진로 및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 **평가:** 학년말(학기말)에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 기록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수립하여 추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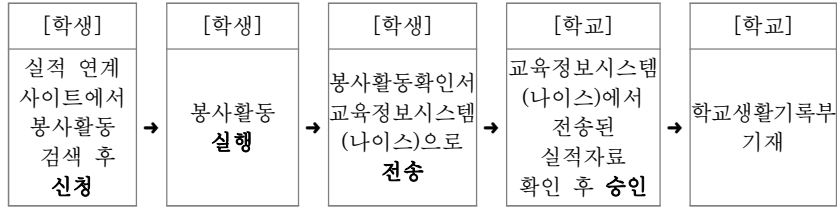
· 학교교육계획에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운영
예)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단위학교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발굴하고 봉사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추진 시 인정 기준, 기능 기관, 절차 등 모든 사항은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준하여 실시
· 봉사활동계획서 및 보고서는 <참고자료 4> 예시 서식 참고하되 학교 자체 양식 가능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실행→전송→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소양교육, 가정통신문, 교사 연수 등을 활용)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지도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처본과 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생이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을 증빙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봉사활동 절차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현행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

□ 학생 봉사활동 평가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성찰과 협의**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라. 학생 봉사활동 지원 강화

□ 시교육청 봉사활동 인정기준 마련

- 초·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해 교육청 기준을 참고하여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 「2022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될 수 없음

□ 학생 봉사활동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 학생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17개 시·도교육청-자원봉사센터-청소년활동진흥원-사회복지협의회) **협력체계 구축·운영**
- **봉사활동 인정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 가족 단위 봉사활동, 사제동행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발굴·개발·운영**

□ 학생 봉사활동 우수사례 공유 (수기공모전)

- 학교 및 학생 중심의 봉사활동 우수사례·안내자료 제작·배포
-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의의, 방법, 유의점, 절차 등)** 및 **자원봉사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전 안내**하여 **학생 봉사활동 인식 제고**

V 추진 사항 및 일정

□ 시교육청 할 일

- 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정기준 및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2022. 2~)
- 단위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실시(2022.2.14.)

□ 학교 할 일

-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2022. 3.)
- 교원대상 학생봉사활동 연수 실시(2022.3.)
- 학생 대상 봉사활동 안내교육(학기 초 또는 방학 전)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연중 수시)

VI 기대효과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봉사시간 확보를 통한 봉사활동 생활화
- 배려, 나눔, 실천, 공동체 의식 등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참고자료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영역별 지침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③ 교외 봉사활동은 가급적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④ 봉사활동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초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봉사활동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외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중·고등학교의 교외 봉사활동은 사전 교육과 사후 평가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참고자료 2

학생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봉사활동 기관에서 활동영역 구분 입력 방법】

이웃돕기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지역 공동체 실천 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베품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 활동	4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 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밀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 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체육 보조 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일손 돕기 재능 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교통 안전 활동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지도활동 재능 나눔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위문공연 재능 나눔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연3회 이내)	4시간	
기 타	※ 학교는 해당사항 없음		

참고자료 3

학생봉사활동 유의점 및 인정 기준

○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해 인정함

봉사활동 운영 시 유의점

-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사전에 담당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가 발생했을 때
 -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 수정한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 ' >(난해한 부호)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 지역명, 기관명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역명, 기관명 등 삭제
- 3. 『학교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 편성 후 원격수업 전환 시**
 - 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함
- 4.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학교교육원 입소 시간, 교외체험학습 시간, 행사활동 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

5.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참고자료 4>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참고

6. 교외체험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예)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7.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의 봉사활동

- 재학생의(초등학교 1~5학년, 중·고등학교 1~2학년)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2월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증빙서류 첨부)를 먼저 거쳐야 함**
- 종업식 이후,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봉사활동 인정기준

1.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 NEIS로 전송되어 오는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은 검증 완료(인정 가능)된 기관임

2.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3.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소감문 작성 활동 병행 시도 미인정)**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

4.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예) 현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5.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 학교계획 및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모두 가능
-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 ※ 예) 마스크 제작, 목도리 제작, 모자 뜨기 등
- 인정 조건
 - ▶ 학생 본인이 참가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
 -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 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
 - ▶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시간만 인정
 - ▶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6.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
- 어떠한 명칭이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7.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 인정

-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
 - 예)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아래의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9. 봉사활동 시간 입력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 단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
-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10.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11.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12. 번역

- 공식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음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13.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에서의 활동만 인정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14. 학생이 실무 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

15. 헌혈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연(학년도) 3회까지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 헌혈활동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16.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1365, VMS, DOVOL 에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나이스 입력 불가

- 교실 및 특별실 청소 등 일상적 학교활동
- 단순 봉사활동 동영상 시청(소감문 활동 병행 포함) 미인정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인구조사 참여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사후 모임
-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진로체험 관련 활동(예: 학생기자활동, 자치법정 등)
-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청소년 참여기구, 자치위원, 자치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평가단 등)
- 늦은 밤 청소년 체험형 방법활동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 봉사시간 미인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019.1.2.)호)
-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17. 비대면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사전 안내 교육 학기당1시간(연2시간) 인정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실천-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
 -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실시간 쌍방향, 영상 저장 등)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시작전, 실천, 결과)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
 -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

2022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2022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 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중학생의 경우 고입 비교과 반영 봉사활동 시수 안내

학년도	반영 내용
2020년	봉사활동 시간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2021년	봉사활동 시간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
2022년	「2023학년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기준(추후 안내)

• 이 외 봉사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별 가정통신문 작성하여 안내바랍니다.

□ 학생봉사활동 추진체계도

국가인증시스템은 자원봉사 실적이 안전하게 평생 관리되는 정부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입니다. 국가인증자원봉사시스템의 통합된 봉사활동 서비스 관리를 위해 아래 사이트 3곳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국가인증시스템에서는 봉사활동 기준에 적합한 터전 승인 및 관리합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날짜, 인증시간,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신청.예약 가능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봉사활동 실적 전송 및 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상담 및 문의

운영기관	국가인증시스템	정부 부처	지역 문의
울산자원봉사센터	1365.go.kr	행정안전부	286-1472
울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youth.go.kr	여성가족부	227-5220
울산사회복지협의회	VMS.or.kr	보건복지부	227-0606

※ 위 내용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교상황에 적합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시고, 학교홈페이지도 게시해 주시고 **봉사활동에 관한 세부내용은 학년초 학생 대상 사전교육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5

봉사활동 각종 서식(예시)

<서식1>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시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장소	기관(장소)명 : 주소 : (전화번호)			
활동 내용	.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또는 서명)				
학 교 장 귀 하	결 재	담 임	부 장	교 감

- ※ 위의 서식은 학교에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서식2>

단체 봉사활동 계획서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번호	성명	활동내용	번호	성명	활동내용
활동 기간 (시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장소	기관(장소)명 : 주소 : (전화번호)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생대표 : (인)					
학 교 장 귀 하	결 재	담 임	부 장	교 감	

- ※ 학급별로 작성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 ※ 담당자가 별도 계획을 세워 학교장 결재 후 시행 가능합니다.
-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

인적 사항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활동 기간 (시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장소	기관(장소)명 : 주 소 :	전화	
활동내용			
활동평가 (의견)	※ 학생이 실시한 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된 내용에 표시(v)] <input type="checkbox"/> 적극, 헌신적으로 활동 <input type="checkbox"/> 보통으로 활동 <input type="checkbox"/> 소극적으로 활동		
	그 밖의 의견 :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 성명 (인) 확인기관명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 ※ 확인서 뒷면에 자기평가 및 소감문을 써서 제출하도록 유도(학교자율에 의함)
- ※ 학부모지도봉사단 명의 확인서 발급 시는 학교장과 나란히 작성 날인
-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봉사활동 소감문

인적 사항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소감 -배운 점 -느낀 점 -제안점 등	

-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서식4>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 정규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총 명)								
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봉사활동 기관	○○초·중·고등학교	기관 연락처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1					18				
2					19				
3					20				
4					21				
5					22				
6					23				
7					24				
8					25				
9					26				
10					27				
11					28				
12					29				
13					30				
14					31				
15					32				
16					33				
17					34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 성명 (인)									
확인기관명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 시 사용,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서식5>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1학기]					
단체봉사 구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 정규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				
학반	학년 반 (총 명)	담임	(인)		
봉사활동 내용					
	날짜	봉사 활동명	봉사영역	인정시간	결시자 비고
1	2022.3.2(수)				
2					
3					
4					
5					
6					
7					
8					
9					
10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 성명 (인)					
확인기관명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서식6-1>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서식6-2>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듬형·융합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 ○ 중·고등학교장 귀하												

- ※ 모듬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교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표시하세요.
-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서식7>

헌혈 학부모동의서·사후 확인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 사항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					
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성명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서식8>

봉사활동 실적 누가기록부

학교명	학년	반	번호	학생 성명	담임 성명(인)
()학교	1				
	2				
	3				

학년	년월일	활동 기관(장소)	활동 내용	활동시간	담임인

※ 학생 스스로 기록하고 담당교사가 확인(봉사활동 누가 지도 및 기록 자료로 활용)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20 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회의록(예시)

회의일시	20 . 03. 00. 14:00	회의 참석자	위원장 : 교감 ○○○ 부위원장 : 부장 ○○○ 위원 : 000, 000, 000, 000, 000, 000
회의장소			
회의안건	20 학년도 1학기 교내 봉사 활동 프로그램 심의 및 의결		
기록 : ○ ○ ○			
회의 내용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내용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부 록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안내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참고사항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운 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 관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 페이지	http://www.1365.go.kr	http://www.vms.or.kr	http://dovol.youth.go.kr
봉 사 활 동 주영역	공공, 공익 관련	사회복지 관련 (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등)	청소년 대상 (도서관, 수련시설 등)
확인서 명칭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
확인서에 표현된 봉사주관기관명	봉사실적등록기관	관리센터[수요처]	현재는 없음. 수정 요청 중

※ 청소년활동진흥센터(DOVOL)는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에 흡수
→ 'e-청소년' 사이트 접속하면 '자원봉사 DOVOL' 과 연계됨
(e-청소년 : 전국 2,300여개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인증 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 정보, 국제교류 정보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종합사이트)

○ 봉사활동 실적의 나이스 연계 시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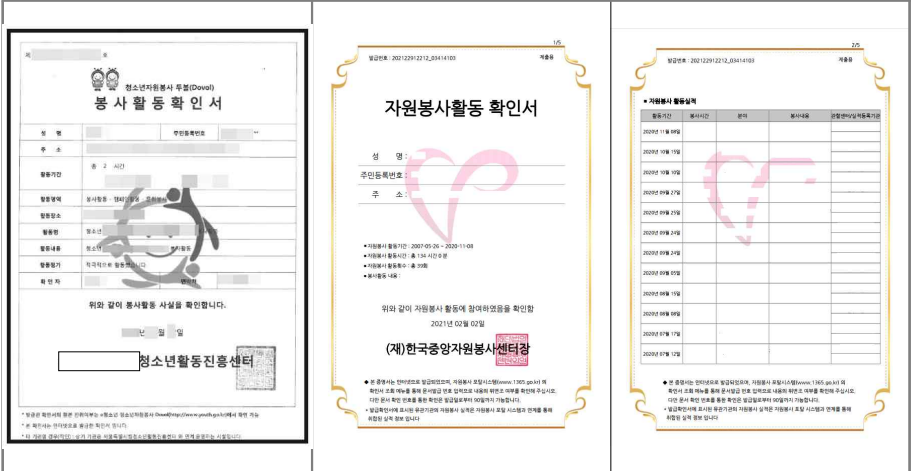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연계하면 주관기관명은 모두 '~센터' 로 입력됨
- 개인이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면 기관장명으로 출력되고(예 : ~협회장), 봉사기관이나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출력하면 기관명으로 출력됨(예 : ~협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는 봉사활동에 대해 인증만 할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 기관으로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별도의 봉사기관이 있다면 봉사활동 주관기관명에 '○○시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가 아니라 해당 봉사기관명이 입력되어야 함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기관 교육 시 봉사활동 내용 및 기관명 입력에 대한 정확한 전달 필요

※ 봉사활동 실적 입력 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지침에 따라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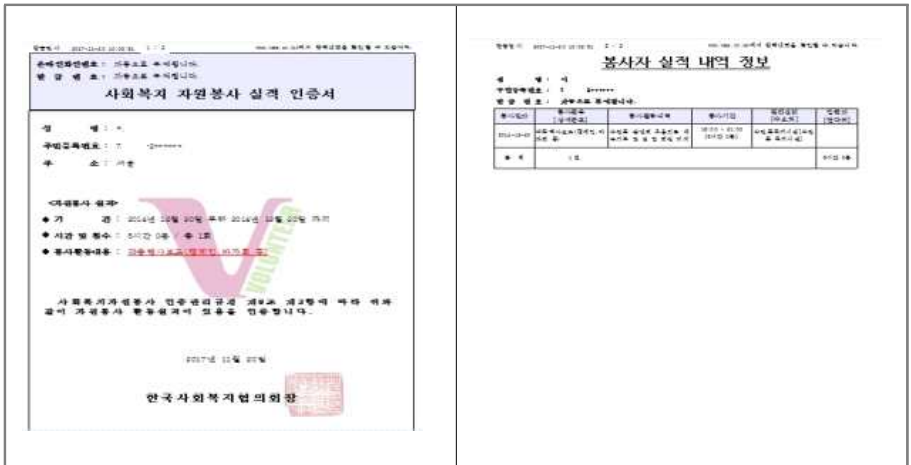
-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란에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입력
- '활동 내용' 란에 객관적 활동 내용 및 봉사활동 제목에 한하여 기재하되,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은 제외하여 입력
- '활동 내용' 란에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 입력 불가**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별 봉사활동확인서 양식



DOVOL 봉사활동확인서
(봉사주관기관 표시 없고 센터로 발급됨)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 '봉사실적등록기관'란에 표기되어 있음)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
(1쪽에는 봉사활동 시간, 횟수, 내용이, 2쪽에는 봉사주관기관이 '관리센터[수요처]'란의 [수요처]에 표기되어 있음)